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도입〉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0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도입	5
1. 개정안의 개요 및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	5
가. 개정안의 개요	5
나.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	7
2.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	11
가. 목적 및 업무 규정 등에 금융안정계정 관련 사항 추가	11
나.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 및 구분 회계처리	13
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15
라. 이자의 감면·납부유예 및 자산·부채의 이전	17
마. 금융안정계정 운용을 위한 준용규정 등	21
3.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	25
가.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요건 및 절차 등	25

나. 자금지원 심사 기준 및 절차	30
다. 보증료 등의 부담	34
라. 자금지원 관련 특례	35
4.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등	43
가.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43
나. 자료제출 요구 등	4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

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 1)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2)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 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1)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 2)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도입

1. 개정안의 개요 및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

가. 개정안의 개요

□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회사¹⁾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등의 재원으로 운용되며,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여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금융회사²⁾의 정리를 지원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은 ① 은행,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납받아 설치된 각 업권별 고유계정과 ②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³⁾으로 구분됨.

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포함)임.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3) 각 업권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45%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한시적(~2026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고유계정 운영경비를 제외한 보험료 전액을 이 특별계정에 이전하고 있음.

[표 1]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별 예금보험료율 및 지원·적립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각 업권별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투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0.08	0.15	0.15	0.15	0.15	0.40	-
회수율	-	64.8	-	-	-	39.0	51.7
지원액	-	226	-	-	-	45,275	271,717
회수액		147	-	-	-	17,644	140,364
기금적립액 ^주	129,534	13,375	59,070	4,943	435	-	-

주: 2023년 12월 말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금액 기준 저축은행계정 적립액은 △1조 8,424억원, 저축은행특별계정은 △5조 4,575억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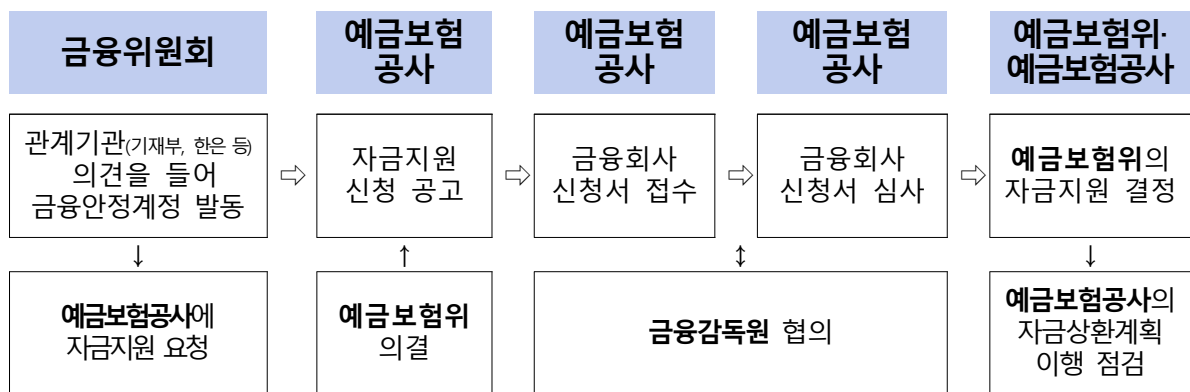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설치하여 금융시장 급변 등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금융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⁴⁾을 활용하여 신속히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② 금융위원회의 자금 지원 요청을

4) 자금 지원을 통한 보증료 수입 및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 등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신청서를 접수·심사한 후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 ③ 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됨.



나.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

□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이 현실화된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사후 정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 따라서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닌 정상금융회사의 일시적 자금난 등을 지원할 수 없는 등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⁵⁾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안

발생 시마다 따로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책 시차 등으로 인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 급변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리스크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경우, 일시적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안정계정은 한국은행의 긴급여신⁶⁾ 등 기존의 시장안정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인데, 자금지원 대상·방식, 신속성,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의 측면에서 종전 제도와 비교됨.

○ (자금지원 대상·방식) 첫째,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 방식⁷⁾에

5) 해외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참고자료】을 참조

6)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7)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는 ① 자금의 대출·예치, ② 자산의 매수, ③ 채무의 보증·인수, ④ 출자·출연이 포함되고, 그 자금지원의 대상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현행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모두 포함되므로,⁸⁾

- 금융안정계정은 거의 모든 금융업권(부보금융회사 해당 업권)에 대해 지급보증, 대출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특정 지원대상 및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제도와 비교됨.

[표 2] 금융회사에 대한 기존 시장안정제도의 지원 대상·방식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한국은행긴급여신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 위주	담보대출(국공채 등 우량담보)
증권금융 대출 ⁹⁾	금융투자	담보대출(국공채 등 우량담보)
금융안정계정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채무 지급보증 신용·담보대출 자본확충 등

(자료: 금융위원회)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 8) 개정안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이하 생략)

- (신속성) 둘째, 정부가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 등¹⁰⁾을 조성하는 경우 재원 마련, 지원 주체 결정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금융안정계정은 재원 및 지원 요건 등을 미리 법정화하고 이미 적립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수익자 부담 원칙) 셋째, 기존 시장안정제도의 경우 자금지원 비용을 공적 영역(재정, 한국은행 등)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안정계정은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공적영역에 대한 부담 전가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안정계정은 지원 대상·방식, 신속성, 수익자 부담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긴급여신 등 종전 시장안정제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① 정상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② 금융안정계정의 보증사고 등 손실 발생 시에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적립해 둔 각 고유계정으로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 시에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춰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설치하여 위기에 대응하기도 하였음.

2.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

가. 목적 및 업무 규정 등에 금융안정계정 관련 사항 추가

□ 개정안은 ① 현행법 목적규정에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을 추가하는 한편, ②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추가하는 등 금융안정계정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8조제1항제6의3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u>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u>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u>운영함으로써</u>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예금등을</u> ----- ----- <u>대처하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u> ----- <u>운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u> ----- -----.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의2. (생략) <u><신설></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u>6의3.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u> 7. -----, 제6호의2 및 <u>제6호의3</u> -----

현행	개정안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생략)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u>그 부대비용</u>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u>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39조의4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u> <u>9의3.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u>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그 부대비용 및 제39조의4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u>

□ (목적 규정) 현행법의 목적은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임.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현행법은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융불안 대응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목적인 ‘예금자 등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부실처리(예금보험금 지급 및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통한 사전적 부실예방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금융위기 단계로 넘어가면 부보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해 막대한 예금보험기금이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내용 등 추가)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 외에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업무까지 추가하는 한편,

- 예금보험기금의 목적·재원 및 용도(안 제24조)에 금융안정계정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새로 도입되는 금융안정계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나.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 및 구분 회계처리

□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이 계정을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정상금융회사의 위기 대응을 위해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각 고유계정 및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 예금보험기금의 계정 구분

업권별 고유계정						구조조정 특별계정	금융안정계정 (신설)
은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금융 투자	종합 금융	저축 은행		
법 제24조의3						법 제24조의4	안 제24조의5
부실금융회사 정리 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을 통한 예금자 보호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지원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정상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 금융안정계정은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예금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설치된 기존 고유계정 등과 그 설치 목적이 상이하므로, 종전에 설치된 다른 계정과 구분 회계처리함으로써 계정의 손익이나 운영 상황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 개정안은 ① 예금보험기금 각 업권별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비롯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 자금, 보증료 등 수입금,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금융안정계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② 이 재원을 활용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차입금과 그 이자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39조의4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4.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5.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6.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현행	개정안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 2. 예금보험기금채권(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상환 3.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각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수 자금 및 보증료 등 수입금¹¹⁾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금융안정계정은 각 고유계정이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달리 정부 출연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¹²⁾을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11) 피지원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에 따른 보증료,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1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차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예금보험금, 부실금융회사 정리, 착오송금 반환지원)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 상환 등)

[표 4]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의 재원 비교

예금보험기금 각 고유계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금융안정계정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정부의 무상양여 국유재산 •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 부보금융회사 차입금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 채권 회수 자금 • 부실금융회사 정리지원 자금 회수금 • 운용수익 등 기타 수입금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 부보금융회사 차입금 • 각 고유계정 차입금 • 예금보험료의 45% • 연체료·채권 회수 자금 • 부실금융회사 정리지원 자금 회수금 • 운용수익 등 기타 수입금	•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 각 고유계정 차입금 • 부보금융회사 차입금 • 보증료 등 수입금 • 자금지원 회수금 • 운용수익 등 기타 수입금

□ 또한, 금융안정계정의 용도에 관하여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 상환, 각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안정계정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지출 항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라. 이자의 감면·납부유예 및 자산·부채의 이전

□ 개정안은 ① 금융안정계정이 각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② 금융안정계정의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⑤ 공사는 자금지원 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이자의 감면·납부유예

☐ 개정안은 각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¹³⁾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금융안정계정의 누적 손실 등으로 인해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 그 이자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안정계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13)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데, 당연직 4인(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과 위촉직 위원 3인(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됨(「예금자보호법」 제8조 및 제9조).

- 첫째, 개정안은 이자의 ‘납부유예’ 뿐만 아니라 ‘감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부유예’의 경우 금융안정계정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이자 ‘감면’의 경우에는 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지원을 위한 고유계정의 적립금을 정상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 고유계정의 손실 원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사 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은 각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석상 ① 각 고유계정의 대출 규모에 따라 그 이자의 감면 규모를 결정하라는 취지인지 또는 ② 수혜 업권의 고유계정에 부담을 더 지우고 다른 고유계정에 대해서는 기금적립액 목표규모¹⁴⁾ 달성 정도 등을 감안하겠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해당 조문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자산 및 부채의 이전

- 개정안은 ‘자금지원 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이는 금융안정계정이 발동된 경우 개정안에 따른 재원과 용도에 맞추어 운용하되, 평시에는 공(空) 계정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자산 및 부채를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 금융안정계정에 수수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이 발생한 해당 업권의 고유계정으로 그 자산을 이전하는 한편, 보증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계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과 관련된 해당 업권의 고유계정으로 부채를 이전하여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자산·부채 이전 시에 ‘자금지원 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의 취지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각 업권별 자기부담원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함.
- 따라서,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의 계정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¹⁵⁾ 특정 업권의 부실이 여타 업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15) 조문 예시: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원인이 된 그 소속 부보 자회사등을 말한다)가 속한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마. 금융안정계정 운용을 위한 준용규정 등

- 개정안은 ① 예금보험기금 계정 상호간 거래방식, ②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간 거래 금지, ③ 여유자금의 운용, ④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규정 등 예금보험기금의 고유계정 운용 관련 조항을 새로 설치되는 금융안정계정에 준용적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안정계정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3항·제4항, 제25조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의 각 고유계정 운용 관련 조항 중 아래 규정을 금융안정계정에 준용적용하려는 것임.

[표 5] 개정안의 준용 규정

준용 조항	주요 내용
제24조의3 제3항	각 고유계정 상호간 거래(자산·부채 이전, 대출 등 거래), 공사와 고유계정간의 거래, 공사의 운영경비 배정방법을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제24조의3 제4항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음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방식을 정함
제26조의2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금융안정계정에 준용적용되는 현행법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법 제24조의3제3항 준용적용) 개정안의 준용규정 중 현행법 제24조의3제3항과 그 연계조항인 제5항¹⁶⁾은 고유계정 상호 간의 ‘자산·부채 이전’을 특별한 고려요소 없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정 간 ‘이자의 감면·납부유예’에 관해서는 특정 계정의 신속한 건전화가 어렵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금융안정계정의 자산·부채 이전과 관련하여 ‘자금지원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계정 간 이자의 감면·납부유예와 관련하여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 제24조의5제5항 및 제6항¹⁷⁾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16)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③ 제2항에 규정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대출 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규정된 계정 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계정 상호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 계정의 누적손실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건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특정 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7) 개정안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⑤ 공사는 자금지원 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표 6] 법 제24조의3제3항·제5항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행법 제24조의3제3항·제5항 (고유계정 대상)	개정안 제24조의5제5항·제6항 (금융안정계정 대상)
자산·부채 이전	(고려사항) 없음 (결정주체) 예금보험위	(고려사항) 자금지원대상, 각 계정의 부담 등 (결정주체) 예금보험위
이자의 감면·납부유예	(고려사항) 없음 (결정주체) 예금보험공사	(고려사항)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 (결정주체) 예금보험위

- 또한, 동 조항¹⁸⁾은 ‘공사와 계정간의 거래’ 및 ‘운영경비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용도에는 공사와 계정간 거래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 제24조의3제3항을 준용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법 제24조의3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준용적용) 개정안의 준용규정 중 제24조의3제4항(기금간 거래금지)¹⁹⁾, 제25조(여유자금 운용)²⁰⁾,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²¹⁾는 다른 기금과

18)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③ 제2항에 규정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대출 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규정된 계정 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19)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20)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1)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의 상호 거래금지, 여유자금 운용 방식,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금보험기금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 개정안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계정이므로, 예금보험기금 관련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별도로 준용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 입법방식 중 ‘준용’은 입법경제와 명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준용규정의 적용 범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대신 금융안정계정 운용을 위한 필수적 규율사항을 직접 법문으로 표시하여²²⁾ 입법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2) 조문 예시

개정안 제24조의5

⑦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

가.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요건 및 지원 절차 등

□ 개정안은 ①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금융안정계정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③ 이 요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요건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요건으로서 ①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②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금융시장 급변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정상금융회사를 지원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요건을 살펴보면, 제1호는 금융시장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문제가 없지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임박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방적 조치로서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개정안의 금융안정계정 발동 요건]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검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안 제1조²³⁾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목적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 대응’이며, 금융안정계정이 남용될 경우 예금보험제도 운용 등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급변과 같은 임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만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발동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²⁴⁾

23) 개정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등을----- 대처하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 ----- 운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함으로 -----

24) 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안정계정 발동 요건 강화방안 예시

- 제2호 :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어 다수 부보금융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 제3호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대상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대상을 ① 부보금융회사²⁵⁾ 또는
②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²⁶⁾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²⁷⁾로 규정하고 있음.²⁸⁾

□ 예금보험기금 적립을 위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부보금융회
사인데,²⁹⁾ 부보금융회사가 적립해 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금융지

25)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6)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

27)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8) 개정안 제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9)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

주회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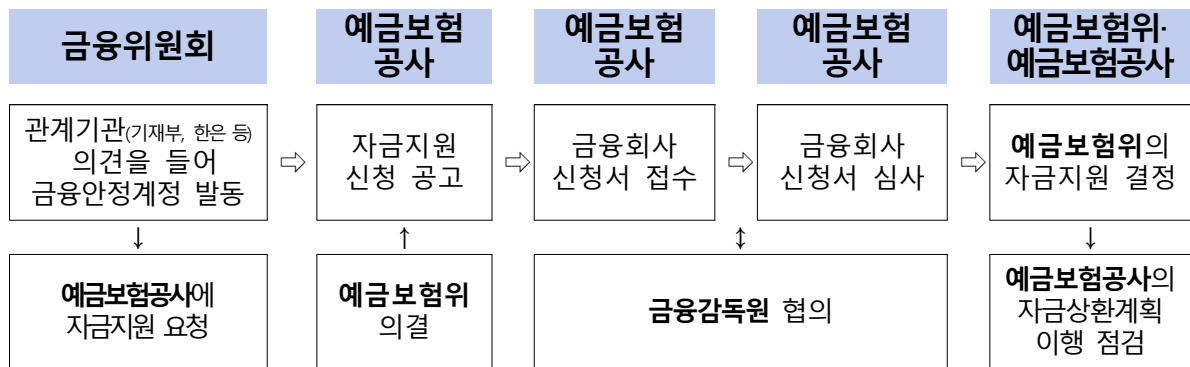
-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량등급의 금융지주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 자금을 자회사등에 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와 부보금융회사의 위험 상황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자금지원대상에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38조³⁰⁾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에도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됨.

3) 금융안정계정 부담의 자금지원 절차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의 발동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③ 이 요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정상금융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30) 「예금자보호법」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금지원의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은 한국은행 등이 수행하는 다른 시장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자금지원의 심사 기준 및 절차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u>재적위원</u> ----- -----

현행	개정안
의결한다. 다만, <u>제38조의4제3항</u>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설></u>	-----<u>제38조의4제3항</u> 및 <u>제39조의4</u> ----- -----. <u>제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u> <u>③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자금지원의 신청 대상·방법·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 공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그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한다)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u>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신청회사(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u> <u>1.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u> <u>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u> <u>3. 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u> <u>⑥ 제5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자금지원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u>

현행	개정안
	<u>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1.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무상태</u> <u>2.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u> <u>3.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시장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u> <u>⑦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⑧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⑨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u> <u>⑩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자금지원 심사 기준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심사 시에 ① 신청회사가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닌지, ② 금융안정계정 발동 요건과 관련하여 신청회사에 자금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③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 구체적인 심사 기준·방법 및 자금지원 조건에 관하여는 ①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무상태, ②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 증자 가능성, ③ 신청회사의 금융시장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각 고유계정을 활용한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안정계정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상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자금지원 심사 절차

- 개정안은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① 공사의 자금지원 신청 공고, ②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 ③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 사실 금융감독원장 통보, ④ 공사의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⑤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에 대한 공사와 금융감독원장 간 협의, ⑥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 결정, ⑦ 신청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신청회사 사유 통지, ⑧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 자금지원 결정을 위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시에 가중다수결(재적위원 2/3이상 찬성)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은 자금지원 결정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시에 가중다수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 결정의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 보증료 등의 부담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정상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피지원회사에게 보증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5(보증료 등의 부담) 공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에 따른 보증료 2. 자금의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3. 그 밖에 자금지원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은 기존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자금지원과 동일하게 법 제2조제7호³¹⁾에 따라 자금의 대출, 채무

3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자금지원” 방식에는 ①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② 자산의 매수, ③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④ 출자 또는 출연(出捐)이 있음(「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

의 보증 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채무 보증에 따른 보증료,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자금지원을 받는 정상금융회사가 보증료, 이자 비용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안정계정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라. 자금지원 관련 특례

1) 채권양도의 특례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산매수 또는 채무보증 방식의 자금지원 결정을 하여 그 피지원회사가 보유했던 지명채권을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 ----- ----- -----

현행	개정안
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 ----- ----- ----- ----- ----- ----- ----- ----- 1. ----- -----제38조 또는 제39조의4----- -----

□ 「민법」 제450조제1항³²⁾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자산매수, 채무보증 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피지원회사로부터 다수의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이 각 채무자에게 일일이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32)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관련 특례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금지원(출자 방식: 무의결권주 매입)을 받는 금융회사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발행 대상 및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7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7(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피지원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대상 및 발행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과의 비례성을 유지하고 둘 사이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44조의3제2항³³⁾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³⁴⁾은 의결권

33)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

없는 주식의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 「상법」 제344조의3제2항: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제2항: ①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국가기간산업 경영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없는 주식과 ②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개정안은 초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지원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피지원회사에 대한 경영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초과 발행된 무의결권주 매입 방식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피지원회사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어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방식에는 초과 발행된 무의결권주 매입 방식 외에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³⁵⁾이 있고, 신주의 발행은 주식가치 희석화로 인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사 시에 무의결권주의 초과 발행을 위해 특례를 두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봐야 할 것임.

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자금지원” 방식에는 ①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② 자산의 매수, ③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④ 출자 또는 출연(出捐)이 있음(「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

3) 최소비용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부담 원칙의 적용 배제

-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제38조의4)과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제38조의5)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7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7(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③ 공사가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법 제38조³⁶⁾는 인수·합병, 재무구조개선 등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부실(우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자금지원 시에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소비용의 원칙) 현행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제38조의4³⁷⁾)은

- 36) 「예금자보호법」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7조(부실금융회사등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 매입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 37)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실(우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자금지원 결정 시에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신청회사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자금지원에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이 최소비용의 원칙을 금융안정계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 신청회사의 자산·부채 등을 실사해 그 재무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금지원 방식을 입증한 후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없어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금융회사를 지원하겠다는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제38조의5³⁸⁾)은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시에 ‘부실’에 책임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시에 부실금융회사와 구조조정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게 됨.

○ 즉, 현행법에 따른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제38조의5)은 그 조문상 적용대상을 ‘부실금융회사’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시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일시적 지원’으로서 금융회사의 정리 가능성 또는 손실부담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다만, 현행법에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규정하여 자금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지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 역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피지원회사의 도덕적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하 생략)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이하 생략)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금지원을 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³⁹⁾

39) 조문 예시: “공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한 경우 그 사유 및 필요성, 지원 대상방법·규모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등

가.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 개정안은 ① 자금지원 신청 시에 신청회사로 하여금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② 자금지원을 받게 된 피지원회사는 자금 상환 이행상황을 반기마다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며, ③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 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6(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① 신청회사는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2. 공사의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3.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및 자금상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피지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

현 행	개 정 안
	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지원회사에 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자금지원 신청회사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 지원 외의 재무상황 개선방안, 지원이 필요한 기간 및 상환계획 등 사항이 포함된 자금상환계획을 자금지원 신청 시에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자금지원 신청회사가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 제39조의4제5항⁴⁰⁾에 따라 그 자금상환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또한, 개정안은 자금지원을 받은 피지원회사로 하여금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피지원회사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피지원회사의 반기별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40) 개정안 제39조의4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는 신청회사(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는 피지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피지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자료제출 요구 등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요구 대상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 심사’ 및 ‘자금상환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자료를 추가하고, 그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요구 및 그 사실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u>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u>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 ----- ----- ----- <u>다음 각 호의-</u> ----- ----- ----- ----- ----- ----- <u>. 이 경우</u>

현행	개정안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④ 공사는 <u>예금자등을 보호하기</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는 <u>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u>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	<u>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의 요구 방법·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1. <u>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u> 2. <u>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u> 3. <u>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u> 4. <u>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u> 5. <u>제39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심사</u> 6. <u>제39조의6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u>----- ----- ----- ----- ----- ----- ----- ----- ----- ----- ⑤ -----<u>제4항에</u>----- ----- ----- ----- ----- ----- ----- -----

현 행	개 정 안
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 심사 및 상환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부보금융회사 및 그 금융지주회사에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통해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는 자금지원 심사 및 자금상환계획 이행 점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피지원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금융안정계정 운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또한, 현행법 제21조제3항⁴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

41) 「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③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게 부보금융회사와 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계정의 사후관리 시에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113

【참고자료42)】

-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발생 예방 및 예보기금 손실·공적자금(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既 구축

① (미국) '08년 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재무부(TARP), 연방예금보험공사(TLGP)를 통한 사전적 지원 제도를 도입

TARP* (자본확충)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자본매입프로그램 CPP* *Capital Purchase Program	■ (내용)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우선주출자) ■ (대상) 부보금융회사 및 그 지주회사 ■ (실적) 707개 회사 \$2,050억 지원 ⇨ \$219억 수익
TLGP* (유동성 지원) *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채무보증프로그램 DGP* *Debt Guarantee Program	■ (내용) 선제적 유동성 지원(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 ■ (대상) 부보금융회사 및 그 지주회사, 계열사 ■ (실적) 121개社 \$6,184억 보증 ⇨ \$102억 수익

② (일본) '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DIC)는 '위기대응계장'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채무보증, 대출, 출자) 기능을 추가*

		제1호 조치	특정 제1호 조치('14년)
지원 대상	정상 여부	조기시정조치 대상 은행	정상 금융회사
	부보 여부	부보금융회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지원방법		출자	출자, 대출, 채무보증

* (지원사례) 제1호 조치에 의해 리소나 은행에 약 1.9조엔 자본확충 지원('03.6월), 제도개편 후('14년)에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사례 없음

③ (EU) EU는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14년 BRRD*를 제정하여 시스템 리스크 우려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공적 지원(Precautionary Public Support)** 제도를 도입

*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은행 정상화·정리지침

** 개별국 공적자금, EU 공동의 위기대응기금(ESM) 등 활용 → 자본확충 또는 채무보증

- 부실예방을 위한 대안조치로서 예금보험기금 또한 활용 가능*

* 예금보험지침(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 개정

[해외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DGP)	일 본 (위기대응계정)	유럽연합 (BRRD, DGSD)
운영 주체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개별국가 혹은 예금보험공사
지원 방식	채무 보증	채무보증, 대출, 출자	채무보증, 자본확충 지원 등
재원 조달	보증수수료 부과, 재무부 차입	차입(중앙회사, 금융회사), 채권발행	(BRRD)공적자금 (DGSD) 예금보험기금
손실 부담	부보금융회사 특별부담금	(원칙) 금융회사 분담금 (예외) 정부 지원금	(BRRD) 개별 사례에 따름 (DGSD) 특별분담금
지원 대상	부보금융회사 및 지주회사, 계열사(비부보회사 포함)	비부보 금융회사 포함	(BRRD) 비부보회사 포함 (DGSD) 부보금융회사 등
의회 승인 여부	(원칙) 필요 (예외)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면제	불요	개별국 의회 승인 여부는 개별국가에 따름
결정 주체	① FDIC, FRB 의결로 권고 ② 대통령, 재무장관 협의 ③ 상하원 합동결의	금융위기 대응회의 및 내각총리대신	(BRRD) EU 집행위원회 (DGSD) 예금보험기구

(자료: 금융위원회)